



미국 고령층 금융자산 착취 피해와 규제 동향

박정희 선임연구원

연구

최근 미국에서는 고령층의 금융자산 착취 및 의심활동(EFE SARs) 신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은퇴 세대의 증가로 고령층 금융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고령자에 대한 금융착취는 보이스피싱 등과 같은 제3자에 의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간병인 등 가까운 지인에 의해 발생하는 사례도 많아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함. 미국 연방정부 및 북미증권감독협회(NASAA), 자율규제기관(FINRA) 등은 고령층의 금융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관련 규제를 제정함

■ 최근 미국에서는 고령층의 금융자산 착취 및 의심활동 신고(EFE SARs)가 증가하고 있음¹⁾

- 美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²⁾에 따르면, 2013년 대비 2017년 금융기관의 고령자 착취 신고 건수가 4배 증가하고, 80% 가량이 노인이나 금융기관에 금전적 손실을 일으킨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고령층 EFE SARs 신고 건수는 6만 3,508건이며, 전체 손실규모는 약 17억 달러에 달함
- 연령별 금융자산 착취 비중은 80세 이상의 노인층이 33%로 60대(29%)와 70대(23%)에 비해 많았으며, 평균 손실규모도 70~80대(4만 2,000달러)가 50~60대(2만 2,000달러) 보다 2배가량 커서 고령일수록 착취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15.6%로 모든 베이비붐 세대(1946~1964년생)가 65세 이상이 되는 2030년에는 5명 중 1명이 은퇴세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고령층의 금융피해는 더욱 커질 것임³⁾

- 개인 금융자산의 77%는 50세 이상의 고령층에 편재되어 있어 향후 노인의 신체변화 및 인지기능 저하 등에 따라 금융자산 착취의 표적이 되기 쉬운 상황임⁴⁾

1) CFPB(2019. 2), “Suspicious Activity Reports on Elder Financial Exploitation(EFE SARs): Issues and Trends” 자료이며, EFE SARs의 금융착취는(Financial Exploitation)는 노인의 자금, 재산 또는 자산 등을 불법적으로 또는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함
 2) FinCEN(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은 미국 국내의 금융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재무거래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기관임
 3) <https://www.census.gov/data/datasets/2017/demo/popest/nation-detail.html>

■ 고령자에 대한 금융착취는 보이스피싱 등과 같은 제3자에 의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간병인, 재무설계사 등 가까운 지인에 의해 발생하는 사례도 많아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함

- 제3자에 의한 피해신고보다 가까운 지인에 의한 피해신고가 건수로는 적었지만, 피해규모는 더 컸음
 - EFE SARs 전체 신고 가운데 제3자에 의한 피해신고는 5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가족(25%), 재무설계사(7%), 간병인 등(4%)의 순으로 나타남
 - 반면, 금융자산 평균 손실규모는 가족 등 가까운 지인에 의한 피해가 5만 달러로 제3자에 의한 피해 규모 1만 7,000달러보다 3배가량 큰 것으로 나타남
 - 노인이 금융착취 피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와 가해자가 노인의 자식이나 친인척이어서 신고하지 않는 경우 등을 감안한다면 실제 피해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됨
- 금융착취 유형은 신고 금융기관(Filer)⁵⁾별로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수표 및 예금계좌 등을 중심으로 피해가 크게 발생하고 있음
 - 금전서비스업(MSB)⁶⁾의 신고사례는 대부분 제3자에 의한 사기이며, 예금수취기관(DI)의 신고사례는 비사기 즉, 지인을 통한 도용이나 탈취가 주된 원인으로 나타남⁷⁾
 - 금융상품별 고령자당 평균 금전피해는 수표 및 예금계좌가 4만 8,300달러, 자금이체 3만 2,800달러, 신용카드 3만 2,600달러 등으로 나타남

■ 미국 연방정부 및 북미증권감독협회(NASAA), 자율규제기관(FINRA) 등은 고령층의 금융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관련 규제를 제정함

- 고령자의 금융착취는 가족 등이 아닌 금융기관에서 먼저 발견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정부 및 자율규제기관에서 해당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018년 5월 연방정부의 「경제성장, 규제완화 및 소비자보호법」 제303조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자의 금융자산 착취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기관이 이를 당국에 보고하도록 하고 공개(Disclosures)한 내용에 대해서는 면책권을 부여함⁸⁾
 - 기존에 금융기관은 고령자의 금융자산 착취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고객의 개인정보보호 관점에서 당국에 보고를 망설이는 경향이 있었음
- 각 주(州)의 증권규제당국으로 구성된 NASAA는 2016년 1월 노인금융자산보호 모델법을 기초로 고령소

4) Daiwa Institute of Research(2019. 2), “高齢者の金融搾取に関する米国の規制動向”, p. 2

5) Filer는 고령층의 금융착취 피해나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경우 금융기관 등에서 해당 내용을 신고하는 행위자로, 크게 금전서비스업, 예금수취기관, 기타(카지노, 브로커, 딜러, 보험회사, 뮤추얼펀드 등)로 구분하고 있음

6) MSB(Money Services Business)는 자금이체, 선불지급수단(Prepaid Access) 등의 지급수단 발행, 환전, 수표교환 및 지급 등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사업을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행하는 것임

7) 예금수취기관(Depository Institutions)은 제3자에 의한 착취(사기)가 27%, 가족이나 지인을 통한 도용 및 탈취(비사기)가 64%인 반면, 금전서비스업(Money Service Business)은 사기가 69%, 비사기가 20%로 나타남

8) S.2155-Economic Growth, Regulatory Relief, and Consumer Protection Act, <https://www.congress.gov/bill/115th-congress/senate-bill/2155>

비자의 금융자산 착취가 있다는 합리적 확신이 있는 경우, 고객계좌에서 자금을 일시적으로 인출제한 (Transaction Holds)할 수 있음

- 금융자산 착취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있음⁹⁾

- 2018년 2월 FINRA는 브로커에게 고령소비자 이외에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인물의 연락처 등을 확보 (Rule 4512)하도록 하고 금융자산 착취의 확신이 있는 경우 인출을 제한할 수 있음(Rule 2165)을 발표 함¹⁰⁾ **kiri**

〈표 1〉 고령층 금융자산 착취 관련 규제 비교

구분	연방법	NASAA 모델	FINRA 규칙
적용대상	은행, 브로커, 딜러, 투자자문업자, 보험회사 등	브로커, 딜러, 주(州)등록 투자자문업자	브로커, 딜러
고객자금 인출제한	불가	가능	가능
금융자산 착취가 의심되는 경우 당국에 보고 의무	없음	있음	없음
자금인출 제한 시 보고 의무	해당 없음	없음	있음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의 연락처 의뢰 의무	없음	없음	있음
민사·행정책임에서의 면책	있음	있음	없음

자료: Daiwa Institute of Research(2019. 2), “高齢者の金融搾取に関する米国の規制動向”, p. 6

9) <http://www.nasaa.org/38777/nasaa-members-adopt-model-act-to-protect-seniors-and-vulnerable-adults/>

10) <http://www.finra.org/sites/default/files/Regulatory-Notice-17-11.pdf>